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 >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6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	3
2.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용 시 협의 및 조정 예외	9
III .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4

I. 개요

1.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3.
- (3) 회 부 일 : 2025. 11.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의 양대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려는 주민 복지조차도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장려해야 할 주민 복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 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

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개정).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4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u>이 된다.	법률 제2106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u>5</u> <u>명</u>----- ----- -----<u>34명</u>----- -----. ② ----- -----<u>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각</u>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 2. (생략) ④ ~ ⑨ (생략)	<u>1명</u>-----. ③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각 1명</u> 2.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¹⁾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통상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됨.

< 제6기(2026.1.23.~2028.1.2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당연직(15)	위촉직(15)
국무총리(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교육부 장관(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부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법무부 장관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국가보훈부 장관	분당서울대학병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법률사무소 정립 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용산구 구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국무조정실장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

1)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의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²⁾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³⁾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체 >

구분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출 방법
제1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총회에서 선출
제2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역의회의장	정기회에서 선출
제3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선임
제4호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	시도대표회의에서 선출

2)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보장위원회 정수를 30인 이내로 규정한 취지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동수로 하여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에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과 시각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라 정수를 34명으로 확대하는 경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지 못하여 균형있는 정책의 심의·조정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위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는 별도의 전문성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정부-민간-지방정부 간 적정한 인원배분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이러한 위원도 결국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부위원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과,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위촉직으로 구성되고 있음.⁴⁾

4)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둘째, 현행법 제21조제4항⁵⁾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도 공무원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협의체 대표자의 지위만을
상실하는 경우에 임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체의 대표자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와 유사한 취지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4)⁶⁾,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9)⁷⁾이 발의되어,
각각 2024년 8월 28일자, 2025년 3월 2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4)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라. (생략)

마.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 ⑨ (현행과 같음)

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9)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2.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용 시 협의 및 조정 예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 ③ (생략)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재정 지원·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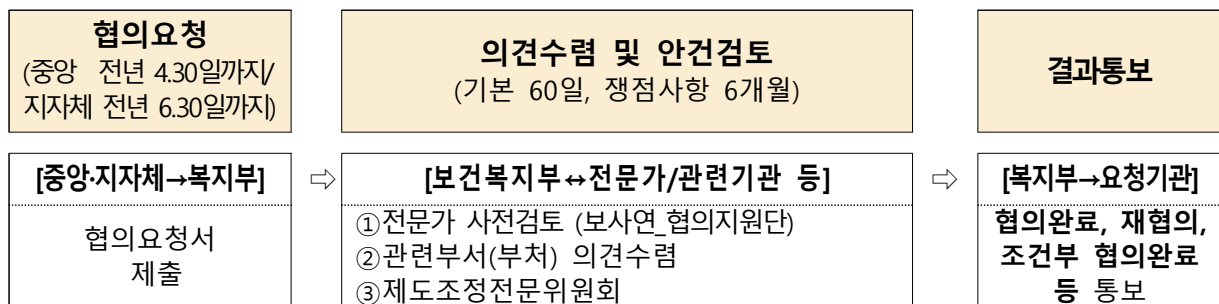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6조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음.

- 최근 5개년(2020~2024)의 통계를 보면, 매년 협의 요청 건수는 평균 1,333건이고, 협의 완료 건수는 평균 918건, 재정투자 규모는 평균 9,62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전협의 진행 절차 >



※ 협의 미성립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8)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략)

< 협의 건수 및 재정 투자 규모 >

(24년 6월말 기준/단위:건,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협의 요청	1,088	1,171	939	1,728	1,160
협의 완료	885	1,015	810	1,347	266
예산액	10,198	14,562	9,184	10,458	1,856

단, 협의 요청 건수는 2024년은 8월 기준 1,160건으로 가중치를 두어 1,740건으로 계산하였고, 협의 완료 건수 및 재정투자 규모는 2024년 6월 기준 각각 266건, 1,856억원으로 가중치를 두어 각각 532건, 3,712억원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 사전협의 및 조정 제도는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재정 지원·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자원 사업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30.기준)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전체접수 안건(중앙 + 지자체)	804	367	635	304	1,272	466	1,143	476	701	260
시·군·구 자체재원*	584	199	415	143	888	254	658	216	183	58

자료: 보건복지부

□ 지역별 인구구조, 복지 수요, 재정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중앙 차원의 절차에 종속시키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동일한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정책 시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 기준과 보완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전협의 및 조정 제도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호 점검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임.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국민의 권리와 연결되는 공공성을 지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자율성은 유사 사업의 난립, 지역 간 서비스 수준 격차 확대, 전달체계의 혼선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전체 사회보장체계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전협의 및 조정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Ⅲ.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 법 취지는 정부와 민간위원을 각각 15명씩 동수로 구성하여,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에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과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한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정책 심의·조정 과정에 지역 대표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의 추천인을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 자율성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재원의 출처보다는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 종합적 검토로 중앙-지방 간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중복·누락 없는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임.

개정안의 협의 미성립시 ‘위원회 조정 절차 제외’는 그간 위원회 조정이 사실상 1건에 불과하여 실질적 입법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분권 존중 및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 전국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여 조정절차 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중앙정부의 조정 및 심의 절차 없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복지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남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악화 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 지자체
재원 차이에 따른 복지 수준의 격차 심화로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우려가 있으며, 중복 수혜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행정 및 재원의 낭비가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 **(목적)**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 이내(위원 위촉권자 : 대통령)

위원회	- 구성 : 30인 이내 (총리,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실무위원회	- 구성 : 30인 이내 (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 위원장 : 2인 (복지부장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 간사 :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전문위원회	- 구성: 5개 전문위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데이터) * 본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로 구성(전문위원회별 각 15인 이내)

- **(기능)**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
 -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우선순위 설정, 중앙 행정기관 간 사회보장정책 심의,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
 -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등
- **(주요연혁)**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시행('13.1.)으로 출범
 - 제1기('13.5.1.~'15.4.30.), 제2기('15.6.10.~'17.6.9.), 제3기('17.12.26.~'19.12.25.), 제4기('20.3.9.~'22.3.8.), 제5기('22.11.22~'24.11.21.), 제6기('26.1.23.~'28.1.22.)